

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하여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6.7,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6.1,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지정목적

-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환경분야의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의 인증을 받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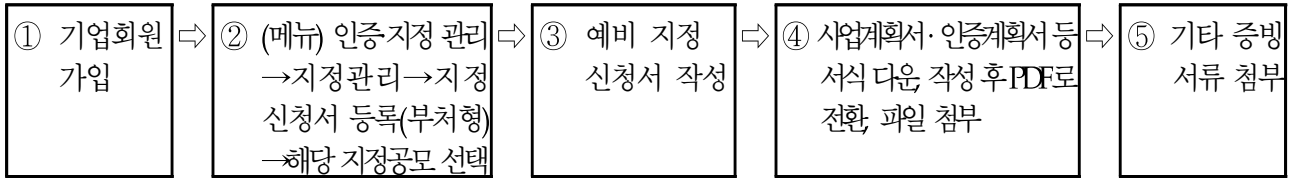
2. 지정 신청

- 신청대상: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 자세한 사항은 지정요건 참조

○ 신청기간 : 2026. 7. 29. ~ 2026. 8. 25. 16:00까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접수마감일 16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을 유의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장애 등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요망. 온라인 접수마감일 이전에 완료된 접수만 인정
- ※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전산 입력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시스템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 전산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661-4006 (대표번호)

○ 문 의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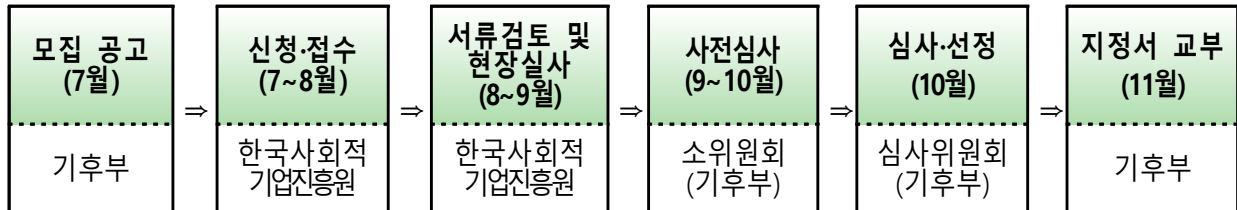
-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9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서울인천센터)(☎대표 02-467-251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대표 1551-2024), 권역별 성장지원
센터 【붙임1】 참고
- ※ 발신지 기준 근거리 위치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센터 자동 연결
- * 세부내용 [참고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센터 현황 확인

3. 지정절차 및 결과 발표

가. 지정절차

- 현지확인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심의 등을 거쳐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도>



※ 지정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심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사전심사 생략 가능

나. 결과발표

-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게재('26.11월 예정)
- ※ 지정결과 발표 시기는 신청기업 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 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4. 지정요건

가.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2)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7)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2)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 조직형태 독립성 판단 여부는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지침 준용

나.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며 현재 관련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 기간: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
(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사항 확인)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등으로 판단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고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 ◇ **기타(창의·혁신)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다.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마. 고용노동 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 관계법령 및 신청 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 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 법령위반 적용기준 : 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동안 위반여부로 판단
 - ※ 위반사항을 해소한 경우에는 지정요건이 충족(유지)된 것으로 봄
 - * (예시: '26.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26.2.20.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 (예시: '26.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26.1.20.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 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서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https://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 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수료증 확인)

바.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간 중복지정도 불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부처형 · 지역형 합산)은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 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취소·반납 3년 경과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재지정되는 경우, 기존 지정기간과 합산하여 지정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④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5. 제출서류

- ①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1]
- ②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 ③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붙임2-1]
- ④ 사회적 목적 실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붙임 2-2 ~ 붙임 2-6] (해당기업만 제출)
- ⑤ 유급근로자 명부[붙임 2-7]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⑥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제출)
 - *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 등 (해당기업만 제출)
- ⑦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 * 공증받은 정관 제출
 -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으로 제출 가능
- ⑧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붙임 2-8]
-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3]
- ⑩ 예비사회적기업 필수 교육과정 이수 확인증
 -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⑪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 ⑫ 공공기관 등과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해당기업만 제출)
- ⑬ 지역개발사업 참여 확인서 (해당기업만 제출)

6. 기타사항

-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 소식자료 > 공지사항 참조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지정요건 유지
 -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말까지)
 - * 기한 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시정지시를 미이행하는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참고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현황

☎ 대표번호 1551-2024 (권역별 지역센터 자동 연결)

권역	센터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인천	소셜캠퍼스 온 서울(성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아인빌딩 8, 9층	02-467-2514
경기 강원	소셜캠퍼스 온 경기(성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2 KT모란빌딩 5, 6층	031-757-2546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소셜캠퍼스 온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198 KH타워 4, 5, 6층	062-946-2173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소셜캠퍼스 온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세종타워A 6층	044-903-0795
대구 경북	소셜캠퍼스 온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대구 스테이션센터 10, 11층	053-431-9822
부산 울산 경남	소셜캠퍼스 온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8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 사옥 5, 6층	051-753-2505

* 센터별 담당 권역 확인 후 기업 소재지에 해당하는 센터로 문의

▶ '취약계층'의 정의(「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갹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 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취약계층' 요건여부 확인서류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기타	한부모가족 증명서, 탈북자 증명서(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여성가장 및 청년 실업자(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뢰하여 확인), 장기실업자(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결혼이민자(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갹생보호대상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갹생보호 법인의 지원 확인서),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등

붙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제출서류

[붙임1]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60일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락처	☎ (FAX.:) (e-mail:)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문화단체 등			
⑦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⑧ 전체 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 종			⑪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여부	
⑫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 산림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전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 기타 ☐ 재활용 ☐ 환경교육 ☐ 생태복원 ☐ 음식물 ☐ 주거환경 ☐ 친환경상품 ☐ 청소 ☐ 기타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붙임 2-1]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붙임 2-2 ~붙임 2-6]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붙임 2-7]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5. 사업자등록증(필수 제출),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6.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3]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붙임 2-8] 9. 사회적기업 교육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사회적기업 포털 제출 10.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기업만 제출) 11. 공공기관 등과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해당기업만 제출) 12. 기타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참여 실적 (해당기업만 제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 개요			
기업명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연혁			
◆ 요건충족 계획			
사회적 목적 유형 신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㉔[], ㉕[], ㉖[]) ☐ 기타(창의·혁신)형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 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 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규약)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식하고자 하는 사회 목(소셜미션) : 사회 목 식 계획(취약계층 고용 늘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늘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시장분석 등		

3. 사업 역량	3-1 사회기업에 싶은 가지게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싶은 가지게 된 배경 3-2 투자 투입인력의 문성 : 전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전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의 사회 목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 목에 따른 정량 실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 사회기업 인증 비 신청 - 사업장(지) 추가 확보 -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 사회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붙임2-2]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붙임2-3]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㉔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1						
			2						
			3				※ 별지 작성 가능		
		수혜자	1						
			2						
3						※ 별지 작성 가능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내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㉕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㉖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2			
	3			
	4			
	5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 사회문제 해결 부분 * 공익적 목적 부분 - 관련사업 추진실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수수료 없음

[붙임2-7] 유급근로자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 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0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2,0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0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2,0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 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붙임2-8]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대표자' 직접 작성함

* 동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로 보아 지정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있나요		
1	예시	❶ 근로기준법 준수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최근 6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그 외 근로기준법을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❷ 최저임금법 준수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5년 시간급 10,030원, 월209시간 기준 2,096,270원) · 최근 6개월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❸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❹ 그 외 고용노동관계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법, 직업안정법 등)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로 구제명령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파견법 등 기타 고용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 예 ☐ 아니오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 예 ☐ 아니오
3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사실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1.(), 2.(), 3.()		☐ 예 ☐ 아니오
5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기타사항) ()		☐ 예 ☐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7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 관련 시설 경력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 1.(), 2.(), 3.()		☐ 예 ☐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앞쪽)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 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및 관리에 있어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 및 소속 근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심사 및 관리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력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시, 기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시, 기초)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